

#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929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2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
- 나.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운영

-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## 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,
-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 다. 위탁 사무 내용

- 가출청소년 보호 사업
- 가출청소년의 보호·상담·선도·수련활동·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
-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문제 예방사업
-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기타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,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## 라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3길 10-16
- 시설규모 : 34.8평( $115m^2$ )
  - 지층 3.5평( $11.5m^2$ )/ 1층 16.5평( $54.7m^2$ ) /2층 14.8평( $48.9m^2$ )
- 개소일자 : 2014. 04. 01
- 이용대상 :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(여, 정원 8명)
- 보호기간 : 3년 이내 중장기보호

## ○ 위치도



마. 위탁기간 : 3년 (2020.01.01 ~ 2022.12.31)

#### 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: 302,016천원

- 인건비 89,208천원, 사업비 167,115천원, 운영비 45,693천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해당없음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## ○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
-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## 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##### 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· 검사 · 검정 ·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##### 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: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노인 · 장애인 · 여성 · 청소년 ·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한경숙 (☎2133-4128)